원주단구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01.1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 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원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2017. 11. 24일부터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원주단구내안애카운티.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제한사항: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는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 송전선로는 1998년 건설 완료되어 현재 운영중이며, 현재 전원개발사업계획은 없고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가시권 내에 있으므로 (109동과 송전선로 이격거리 약 24M)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 바람.(단, 본 아파트 인접한 송전선로 및 철탑은 아이엠홀딩스주식회사가 지중화 공사를 수행키로 2017년 9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와 협약체결하였으며, 사용승인전 지중화 공사 완료 예정임.)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전매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계약금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 2017.11.24.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_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주택과 – 2751호(2018.01.1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887번지외 21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6~20층 총 9개동, 총 571세대 및 기타 부대 복리시설 [특별공급 184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56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56세대, 신혼부부 특별 공급 5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6세대 포함)]

■ 대지면적 : 총 29,538.0㎡, (공동주택 연면적 : 79,814.0056㎡,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 1,275.8087㎡)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
			공급 면적			기타 공용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2018000016–1	84.9317A	84.9317	22.3804	107.3121	32.2640	139.5761	50.1693	421	42	42	42	12	283	22
	2018000016–2	84.8784B	84.8784	23.5398	108.4182	32.2440	140.6622	50.1378	75	7	7	7	2	52	4
	2018000016–3	84.9024C	84.9024	22.8725	107.7749	32.2530	140.0279	50.1520	75	7	7	7	2	52	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타입)	동	공급 세대수	층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18.06.20	2018.10.22	2019.02.20	2019.08.20	2019.11.20	2020.02.20	
84.9317A	101동 102동 103동 3호, 4호 104동 105동 3호, 4호 106동 3호, 4호 107동 108동 3호, 4호 109동	17	1층	73,910,336	170,989,664	244,900,000	10,000,000	14,490,000	24,490,000	24,490,000	24,490,000	24,490,000	24,490,000	24,490,000	73,470,000
		22	2층	73,910,336	177,889,664	251,800,000	10,000,000	15,180,000	25,180,000	25,180,000	25,180,000	25,180,000	25,180,000	25,180,000	75,540,000
		22	3층	73,910,336	181,789,664	255,700,000	10,000,000	15,570,000	25,570,000	25,570,000	25,570,000	25,570,000	25,570,000	25,570,000	76,710,000
		44	4~5층	73,910,336	185,789,664	259,700,000	10,000,000	15,970,000	25,970,000	25,970,000	25,970,000	25,970,000	25,970,000	25,970,000	77,910,000
		110	6~10층	73,910,336	189,689,664	263,600,000	10,000,000	16,360,000	26,360,000	26,360,000	26,360,000	26,360,000	26,360,000	26,360,000	79,080,000
		206	11~20층	73,910,336	193,689,664	267,600,000	10,000,000	16,760,000	26,760,000	26,760,000	26,760,000	26,760,000	26,760,000	26,760,000	80,280,000
	계	421													
84.8784B	103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108동 1호	2	1층	74,099,969	174,400,031	248,500,000	10,000,000	14,850,000	24,850,000	24,850,000	24,850,000	24,850,000	24,850,000	24,850,000	74,550,000
		4	2층	74,099,969	179,700,031	253,800,000	10,000,000	15,380,000	25,380,000	25,380,000	25,380,000	25,380,000	25,380,000	25,380,000	76,140,000
		4	3층	74,099,969	183,700,031	257,800,000	10,000,000	15,780,000	25,780,000	25,780,000	25,780,000	25,780,000	25,780,000	25,780,000	77,340,000
		8	4~5층	74,099,969	187,700,031	261,800,000	10,000,000	16,180,000	26,180,000	26,180,000	26,180,000	26,180,000	26,180,000	26,180,000	78,540,000
		20	6~10층	74,099,969	191,700,031	265,800,000	10,000,000	16,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79,740,000
		37	11~20층	74,099,969	195,700,031	269,800,000	10,000,000	1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80,940,000
	계	75													
84.9024C	103동 2호 105동 2호 106동 2호 108동 2호	2	1층	73,985,368	174,614,632	248,600,000	10,000,000	14,860,000	24,860,000	24,860,000	24,860,000	24,860,000	24,860,000	24,860,000	74,580,000
		4	2층	73,985,368	179,914,632	253,900,000	10,000,000	15,390,000	25,390,000	25,390,000	25,390,000	25,390,000	25,390,000	25,390,000	76,170,000
		4	3층	73,985,368	183,914,632	257,900,000	10,000,000	1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77,370,000
		8	4~5층	73,985,368	187,814,632	261,800,000	10,000,000	16,180,000	26,180,000	26,180,000	26,180,000	26,180,000	26,180,000	26,180,000	78,540,000
		20	6~10층	73,985,368	191,814,632	265,800,000	10,000,000	16,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79,740,000
		37	11~20층	73,985,368	195,814,632	269,800,000	10,000,000	1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80,940,000
	계	75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기계 · 전기실 등 공용면적 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84.9317A	84.8784B	84.9024C
약식표기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등]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확장시 확장비용이 추가되며 확장비용도 등기비용, 취득세가 부과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항임.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는 것에 동의하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아니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대출금융기관 지정이 불가하거나,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층별,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층별,호별로 구분 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 함.

2_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선정 일시 · 장소

구 분	접 수 일 시	장 소
특별공급	2018. 01. 22.(월) / 10:00~14:00	원주단구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 견본주택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634–9번지, 문의 : 033–744–4560]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8. 01. 22.(월) / 16:00	

- 특별공급 추첨순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일반 특별공급,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 함. (단,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추첨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 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 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주택에 신청 가능한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2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구 분	원주시 / 강원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5㎡ 초과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계약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과 동일(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참조)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 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참조)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족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 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음.

※ 청약접수 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공급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계	주 택 형		
		84A	84B	84C
일반 특별공급	56	42	7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6	42	7	7
신혼부부 특별공급	56	42	7	7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6	12	2	2
계	184	138	23	23

■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56 세대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대상자,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특별공급 자격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특별공급을 위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 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자 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 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 ·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56 세대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0조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 이어야 함.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74호[2015.12.29.])에 의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 수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	65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56 세대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 및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함.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 고시)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월평균 소득 * N–5 } * N → 6인 이상 가구원 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유지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소득입증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조 제13항 : 16 세대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포함)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원주시)거주 신청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1인 1건만 신청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2012.09.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하는 경우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 분	원주시/강원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5㎡ 초과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거주구분	순 위	면적구분	신청자격 및 청약관련예금
민 영 주 택	원주시 / 강원도 거주자	1순위	전 주택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 하는 자.(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1순위 자. 납입 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원주시, 강원도 거주 포함)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청약자격 발생순위 유의사항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는 횟수로 인정되지 않음.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함.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1) 공통
  – 순위별로 접수일정을 구분하여 층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 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 85㎡이하 주택형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적용 우선공급하고,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 함.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 지역(시,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 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 기준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총점 84점)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점 만점 기준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 청 자 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②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함)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③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며(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④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①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②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②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 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 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3_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원주시, 강원도	2018.01.22(월) 10:00~14:00	견본주택 방문접수	• 원주단구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 견본주택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634–9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18.01.23(화) 08:00~17:30	인터넷 신청	• 1,2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2순위		2018.01.24(수) 08:00~17:30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인 신청불가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장애인, 유공자, 철거민 등은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혼,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 30세이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제3자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4_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특별공급	• 일시 : 2018.01.22.(월) 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 2018.01.30.(화) • 확인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당사 홈페이지(일반공급 www.원주단구내안애카운티.com)
일반공급	• 일시 : 2018.01.30.(화)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예비 당첨자 포함)	

※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견본 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및 당사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청약 → 당첨사실조회 → 주택별 조회
	이용기간	2018.01.30 ~ 2018.02.08 (10일간)	
전화 / ARS	전화번호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이용기간	2018.01.30 ~ 2018.02.08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8.01.30 (08:30) (※ 제공시각은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함.(동,호수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원주시 거주자가 우선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5_계약체결

■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 약 기 간	계 약 장 소
당첨자 계약체결	2018.02.12(월) ~ 2018.02.14(수), 10:00~16:00	원주단구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 견본주택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634–9번지

■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 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 통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본인,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본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일반공급 가점제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직계 존 · 비속	• 주민등록초본(직계존 · 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 직계비속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 본 주택의 입주자 저축요건 충족한 자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본인, 대리인	※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인감도장(계약자 본인) •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에게 귀속됨.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원주시 및 강원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 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 ·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은 분할, 합병 및 기타사정 등으로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 경우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시점의 대지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정산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의 증감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 부 계 좌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분 양 대 금	하 나 은 행	222–910034–81104	한국자산신탁(주)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고란에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체결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발생시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예비당첨자 추첨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예비당첨자 계약체결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선착순으로 계약 체결함.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대출금융기관 지정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 대출한도 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함(중도금 무이자)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0년 6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회의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지하주차장, 게스트하우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6_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원, VAT포함]

주 택 형	확 장 위 치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 약 시	입 주 지 정 일
84A	거실, 주방/식당, 침실2, 침실3, 알파룸, 드레스룸	13,000,000	1,300,000	11,700,000
84B	거실, 주방/식당, 침실2, 침실3, 알파룸	13,000,000	1,300,000	11,700,000
84C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13,000,000	1,300,000	11,700,000

■ 발코니확장대금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 부 계 좌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발코니 확장대금	하 나 은 행	222–910034–80504	한국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 ·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는 발코니 확장시 벽체, 천장, 마루마감 및 가구 등이 미시공 되며, 자세한 시공기준은 반드시 견본 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후 거실, 침실 바닥 마감은 강마루를 적용함.
- 발코니 확장 시공으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칸막이의 제거, 변경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미확장세대는 확장형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도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견본주택 세대 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각 세대 주방가구는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각 세대 안방 발코니 창은 발코니확장공사 선택시 분양가 포함 설치 됨.
- 견본주택 각 세대 드레스룸의 가구는 확장공사 선택시 분양가 포함 설치됨.
- 견본주택 각 세대 침실2 또는 침실3의 붙박이장은 확장공사 선택시 분양가 포함 설치 됨.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1. 추가선택품목 설치비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원, VAT포함]

주 택 형	선 택 안		설 치 위 치	업 체 명	판 매 가 격
84A, 84B, 84C	선택1	2대	거실 + 침실1	LG전자	3,650,000
	선택2	3대	거실 + 침실1 + 침실2	LG전자	4,790,000
	선택3	3대	거실 + 침실1 + 침실3	LG전자	4,790,000
	선택4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LG전자	6,290,000

(2) 빌트인 가전 [단위:원, VAT포함]

품 목	주택형(타입)	제 품 명	업 체 명	가 격	비 고
빌트인 냉장고	전 주택형	LG R–L712JCS	LG전자	5,270,000	냉장고도어 패널마감 포함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 주택형	LG R–D222	LG전자	1,500,000	키큰장 + 선반포함 + 도어
하이브리드 쿡탑	전 주택형	BEH3G	LG전자	950,000	전기콘센트 포함

2.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에어컨 배관용 스리브(거실,안방)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과 침실1(안방)에 일반에어컨 배관용 슬리브가 기본 설치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하이브리드쿡탑 옵션 선택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3.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목에 준함.

구 분	금 융 기 관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옵션 선택품목 공사비	기 업 은 행	677–017658–04–012	그린시스템(주)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
1) 창호	세대 내부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세대내부 문의 가틀, 각실PL창호, 세대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실외기루버, 소방관련 방화문
2) 바닥재	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 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우수선홈통
3)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타일, 아트월)	석고보드 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도장, GAS배관
4) 천장	천장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장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전동빨래건조대	천정틀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도장, 소방시설, 세대기계 시스템
5)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악세사리, 천정재(천정틀 포함), 재료분리대,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휀, 욕실바닥 및 벽타일, 욕실스피커폰	조적, 방수, 미장, 전기설비배관/배선
6)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사리, 수납선반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 일체(가스쿡탑, 렌지후드, 전기오븐, 주방액정TV)	소방검사관련 자동식 소화기 및 주방배기덕트
7) 조명기구	부착형, 거치형, 매립형 조명기구 일체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8) 일반가구 및 기타	신발장,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파우더(화장대)장, 반침장, 수납선반 및 가구(악세사리 포함)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일괄소등스위치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원, VAT포함]

구 분	84A	84B	84C
옵 션 금 액	25,217,000	25,456,000	25,313,000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마이너스옵션 제도는 계약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마이너스 옵션 제도는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 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시공내역 등 확장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을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단열공사 · 방수공사 ·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전기공사 ·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 통신선 및 배관,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분양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7_기타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 1억 3천만원(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주택가격 8천만원) 이하인 1주택 (소형 · 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 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3.3058]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 및 계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이전고시 후 등기가 경료되는 관계로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목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의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는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 바닥마감패턴,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함.
- 대지의 일부는 도로 및 인도로 사용됨.
- 일부 동 배면으로 옹벽설치구간이 있으며, 측량결과에 따라 도서 및 모형, CG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 개별 공지 예정임.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단지 주변현황[인접APT 단지, 주변상가, 학교(학교부지포함), 공원(기부채납 공원 포함), 기차역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음.
- 본인 동 · 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소방용/이삿짐용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 · 설치한 새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측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입주자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지조경(녹지 및 수경시설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인근에 중앙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후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남측 중앙고속도로변으로는 아파트로부터 약 30M거리에 옹벽이 설치되어 시야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반사항]
- 본 아파트 분양을 위해 제작배포된 인쇄물, PR기사, 견본주택내 안내지도 등 모든 홍보물에 표기된 당 사업지 인근의 주거지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상 주거용지로 변경되어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자료를 근거로 표기되었으며, 이 개발계획은 한국자산신탁(주), 에이스건설(주), 양우종합건설(주), 아이엠홀딩스(주)와는 무관하며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추진 중 변경,지연,취소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함.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명기.

[동별 고지사항]

구 분	내 용
각동 공통사항	– 주동 인근에 설치되는 쓰레기집적소로 인해 계절에 따라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층은 보행동선을 위한 일부 필로티구조인 경우 저층부세대는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이 있어 주민의 생활통행에 있어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동측에 송전용 철탑이 인접하여 생활 및 시야에 불편이 있을수 있음.(철탑은 지중화 예정) – 단지 내 차로 또는 비상차로에 면한 세대는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등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지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야간 차량불빛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101동	– 저층부의 전면의 경우 투시형방음벽이 가까이 설치되어 시야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의 전면의 경우 옹벽이 설치되어 시야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세대의 경우 북쪽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야간 차량불빛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102동	– 어린이놀이터가 전면부에 있어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세대의 경우 동,서쪽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야간 차량불빛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103동	– 저층부 세대의 경우 남쪽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야간 차량불빛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북측에 차량진출입로가 있어 차량통행 소음이 있을 수 있음.
104동	– 저층부 세대의 경우 동,서쪽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야간 차량불빛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서측에 차량진출입로가 있어 차량통행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가 후면부에 있어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105동	– 저층부 세대의 경우 남측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야간 차량불빛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가 전면부에 있어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어 생활간섭이 있을수 있음.
106동	– 저층부 세대의 경우 남쪽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야간 차량불빛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남측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야간 차량불빛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북측에 단지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있어 생활간섭이 있을수 있음.
107동	– 저층부 세대의 경우 동,서쪽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야간 차량불빛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108동	– 저층부 세대의 경우 동,남,북쪽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야간 차량불빛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전면 및 1층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타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간섭이 있을수 있음.
109동	– 저층부의 전면의 경우 투시형방음벽이 설치되어 시야에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의 전면의 경우 옹벽이 설치되어 시야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타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간섭이 있을 수 있음. – 1층의 대지레벨이 타동보다 높아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후면에 진입계단 및 엘리베이터 설치됨.) – 동측에 단지외부로 송전선로가 가시권 내에 있으며, 이격거리는 약 24M 임.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항 목	적 용 여 부	비 고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효율 기자재	적용	보일러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차단스위치 : 거실, 침실1 대기전력차단콘센트 : 침실2, 3, 알파룸, 주방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현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거실, 주방 조명기구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거실, 침실1,2,3, 알파룸
	절수기기	적용	수전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원, VAT포함]

구 분		감 리 회 사 명	감 리 금 액 (원)	비 고
원주단구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	건축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324,914,160–.	
	전기	유원이앤에프(주)	₩408,714,116–.	
	소방, 통신	㈜청우이엔지	₩249,865,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 증 서 번 호	보 증 금 액 (원)	보 증 서 기 간
제 01282018–101–0000600 호	₩105,525,35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소유권보존등기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차입형 토지신탁

(1) 본 주택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아이엠홀딩스(주)와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 및 "시공사" 에이스건설(주), 양우종합건설(주) 간에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임.
(2) "본 사업"의 모든 분양수입금은 "신탁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며,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수분양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며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의 모든 권리의무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한국자산신탁(주)는 신탁계약에 의거 본 물건에 관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아이엠홀딩스(주)가 그 책임을 부담함.
(5) 수분양자에 대한 제반 관리 업무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중 분양계약 해제/해지시 공급금액 반환 채무 이행 및 공사 지연을 제외한 사유로 발생하는 입주지연 지체상금은 위탁자 및 수익자 아이엠홀딩스(주)가 책임 처리하고, 하자보수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주지연 지체상금은 시공사 에이스건설(주), 양우종합건설(주)가 연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한국자산신탁(주)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6) 하자보수 이행책임(미 · 오시공 포함)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한국자산신탁(주)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모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에이스건설(주), 양우종합건설(주) 및 아이엠홀딩스(주)가 그 책임을 부담함.
(7)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은 본 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PF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구 분	사 업 주 체	시 공 사		위 탁 사
상 호	한국자산신탁(주)	에이스건설(주)	양우종합건설(주)	아이엠홀딩스(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카이트타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401호(문래동3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호계동)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634–9번지
등록번호	110111–2196304	194211–0016528	110111–0018203	141211–0076848

■ 분양관련문의

분 양 문 의	견 본 주 택 위 치	홈 페 이 지
TEL : 033)744–4560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634–9번지	www.원주단구내안애카운티.com

■ 견본주택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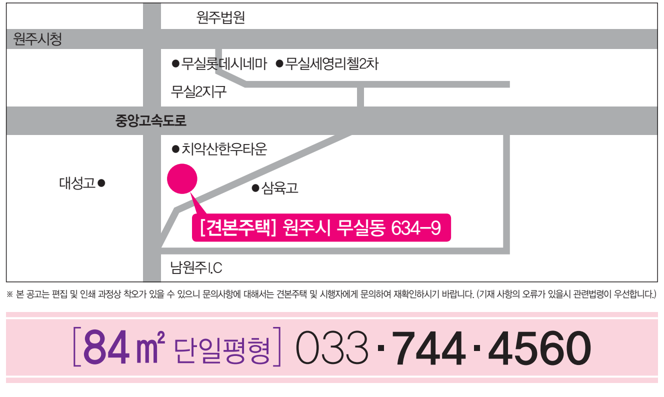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및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84㎡ 단일평형] 033·744·4560

원주 단구 내안愛카운티 에듀파크

www.원주단구내안애카운티.com